

- 제222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 -

조례안 심사보고서

- 일 시 : 2023. 6. 22.(목) 10:00
- 장 소 : 본회의장
- 안 건
 -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23. 5. 26.
- 나. 발 의 자 : 차순임 의원 외 6인
- 다. 회부일자 : 2023. 5. 31.
- 라. 상정일자 : 제222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 6월 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차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악성민원·고질민원 및 성희롱·성폭력 또는 재난·재해 현장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14일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특별휴가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8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및 여건에 알맞은 적절한 휴가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소수 의견 요 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23. 5. 26.
- 나. 발 의 자 : 장철규 의원 외 6인
- 다. 회부일자 : 2023. 5. 31.
- 라. 상정일자 : 제222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 6월 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장철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청가서 제출·승인, 결의안·건의안의 처리절차, 예산안의 제출기한 등 의사 운영 및 진행과 관련하여 회의규칙 상 미비된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가. 청가서 제출 및 승인,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나.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시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다. 결의안·건의안의 제출·발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라. 예산안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7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규칙안은 기존의 불명확하고 모호한 단어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실무상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절차와 과정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소수 의견 요 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